

Part.6

가구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내 기부결정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서론

1. 연구 목적

경제학에서는 경제행위의 기본단위를 가구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성인은 결혼을 통하여 가구를 구성하고 한 가구에 소속된 가구원들은 각자 전문화된 영역을 가짐과 동시에 서로 협동하여 가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원들 간의 선호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청명한 가을날 주말 오후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야구장에 가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남편과 함께 예쁘게 물든 단풍구경을 가기를 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부부가 같은 시간에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프로야구를 보러 가거나, 단풍구경을 위해 산에 가거나, 혹은 제3의 다른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가운데 부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행위를 관찰하게 된다. 그렇지만 최종 선택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선호를 관철시키고자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최종 결과는 결국에 각각의 배우자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가구원들 사이의 이질적인 선호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관찰하는 가구의 경제행위는 가구원들 간의 협상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원들 사이 선호의 이질성은 가구의 기부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납부한 기부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며 이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기부행위를 다른 사람의 행복이 경제학에서 효용이라고 불리는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즉 개인에게 효용을 주는 하나의 재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가구를 생각해보면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선호하는 기부분야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군가는 TV에서 굶주리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도와 달라는 캠페인을 보고 나서 기꺼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혹은 그녀의 배우자는 이러한 TV 광고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애초에 남을 돕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절에 헌금을 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에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혹은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선호를 보이지만 기부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찰하는 두 명 이상(보통의 경우 남편과 아내 및 자녀들)으로 구성된 가구의 기부행태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가구원, 특히 남편과 아내의 협상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¹⁾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부가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선호가 다른 경우 가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모형 및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방식의 경제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많지 않다.²⁾ 한편 개인의 기부행위 혹은 자원봉사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추정식에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고려한 국내 선행연구³⁾들은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성별의 차이에 따른 기부성향 및 기부분야의 선호차이를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째, 과연 성별에 따라 기부 행위 자체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인가구만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기부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남성가구와 여성가구 각각에 대하여 총기부금 지출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선호, 즉 효용함수의

1) 자녀들의 경우 부모에게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의 분석에서 자녀의 기부행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래에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선호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녀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대표적인 해외연구들로 Browning, Bourguignon, Chiappori and Lechene(1994), Blundell, Chiappori, Magnac and Meghir(2007), Behrman and Rosenzweig(2006), Mazzocco(200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Lee(2007)와 Ham and Song(2014)의 연구 정도를 찾을 수 있다.

3) 특히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로 강철희(2007), 강철희·이중은·배민경(2009), 강철희·변은지·구지운(2011), 박태규·윤병호·정진욱(2008), 김옥·송미영(2006) 등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더불어 특히 개인의 소득 대비 총기부금의 규모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부부가구의 경우 과연 부부가구의 기부금 지출 결정과정에서 부부의 협상력이 중요한 결정 요인인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별에 따라 독신가구와 비교하여 기부분야별 기부금의 규모 및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만일 독신가구의 경우와 대비하여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 중에서 일부는 최소한 부부의 협상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총기부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기부금 결정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로 각 배우자의 협상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신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선호하는 기부분야에 대한 차이가 관찰되지만 가구 소득이 총기부금에 미치는 한계적 영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총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소비지출을 통제된 상태에서 개별 배우자의 소득이 남편과 아내의 총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의 학력과 연령으로 대표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 또한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지출된 기부금에 대한 분석은 독신가구의 기부금지출에 대한 분석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 여성의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기부분야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의 협상력과 협상과정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개인의 기부와 가구의 기부금 지출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경제모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제Ⅲ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지는 제Ⅳ절에서는 개인 및 가구의 기부금 총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과 추정 결과를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기부금 지출에 관한 경제 모형

1. 개인의 기부금 결정 모형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부금지출에 대한 결정은 효용극대화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 모형 또는 비순수 이타 모형에서처럼 기부금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 소비 모형에 근거한 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예산제약에 직면한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아래의 식 (1)과 같다.

$$(1) \quad \begin{aligned} & \text{Max } U(c, g) \\ & \text{s.t. } c + g = m, \quad g \geq 0. \end{aligned}$$

위의 모형에서 예산제약식에 포함된 g 와 c 는 각각 기부금과 기부금을 제외한 소비(Hicksian composite commodity)지출을, m 은 소득을 의미한다.⁴⁾ 이 모형은 개인의 노동공급의사결정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 여가(leisure)는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화로서 작용하지만 기부금에 관한 효용극대화 과정에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분리성(separability)을 가정한다.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g 와 c 모두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갖는다. 그러나 만일 개인의

4)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만일 소득공제 형태로 혜택이 부여된다면 기부금의 가격은 1이 아니고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개인 i 의 한계세율이 t_i 라면 i 의 기부가격 p_i 는 $1-t_i$ 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기부금의 세제혜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므로 식 (1)의 모형은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법으로 정한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부처에 기부한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이 기부로부터 얻는 한계효용보다 클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모서리해 (corner solution)가 발생한다.⁵⁾ 이러한 경우 개인의 기부금 지출금액은 0이 된다. 즉,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하면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모서리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가구의 기부금 결정 모형: Collective Model

효용극대화 원리를 기본으로 한 기혼 부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모형 중에 가장 단순한 모형은 부부가 정확하게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가구의 모든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을 단일의사결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단일모형은 부부 중 누가 소득을 얻는지 관계없이 총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지출유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이러한 단순한 의사결정과정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일의사결정모형의 대안으로 Collective Model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⁶⁾ Collective Model은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부부의 협상력에 따라 가구의 최종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부부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에 직면한다. 아래의 Collective Model에서도 개인의 기부모형과 마찬가지로 여가에 대한 분리성(separability) 가정을 적용하여 가구의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은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

$$(2) \quad \begin{aligned} & \text{Max } \mu(Z)u^h(c_h, g_h) + (1 - \mu(Z))u^w(c_w, g_w) \\ & \text{s.t. } c_h + c_w + g_h + g_w = m, g_h \geq 0, g_w \geq 0. \end{aligned}$$

5) 효용극대화수준에서 개인의 소비는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c 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6) Collective Model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Browning, Bourguignon, Chiappori, and Lechene (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위의 최적화 문제에서 u^h 와 u^w 는 소비와 기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효용함수를 의미한다. 즉, 남편은 자신의 소비 c_h 와 자신이 선호하는 기부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총기부금을 배분하여 g_h 만큼 기부함으로써 효용을 얻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용함수를 구성한다. Collective Model은 남편과 아내의 선호를 나타내는 효용함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이루어진 가구효용함수를 부부가 함께(jointly)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위 식에서 μ 는 가구효용함수에서 남편의 선호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남편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mu)$ 는 아내의 협상력을 나타낸다.

위 식에서 Z 는 남편과 아내의 협상력(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의미한다. Z 에는 만일 협상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가진 힘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혼관계가 해체될 경우 각자가 가질 수 있는 outside option value(single로서의 삶과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예를 들어, 나이, 학력, 외모, 노동시장에서 임금률 및 집안 배경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 기부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는 가구효용함수의 극대화과정에서 c_h , c_w , g_h , g_w 의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도록 가구 소득(m)을 배분한다. 만일 g_h 혹은 g_w 의 한계효용이 c_h , c_w 의 한계효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0으로 관찰되는 모서리해가 발생할 수 있다.

Ⅲ. 분석 자료

1. 재정패널

1) 재정패널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구축하여 제공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정패널은 2008년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년까지 5개 연도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2008년 원표본 유지율이 79.9%에 이를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패널 데이터이다.⁷⁾

재정패널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조사항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가구조사에서 가구원의 인적 현황·주택 및 자동차 보유현황·가계지출현황·이전지출 및 이전소득·복지현황·자산 및 부채현황을 조사하고, 가구원조사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연금 및 보험지출현황·연간 소득·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소득세 납부유형과 소득공제현황을 조사한다.⁸⁾

이와 같이 재정패널에서는 가구원조사 설문에서 가구원별 소득원천(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 등)에 따른 소득을 별도로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개인의 연간소득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원들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소득 변수를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가

7) 제Ⅲ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의 『1~5차 재정패널 조사 사용자안내서』를 발췌·요약하였다. 재정패널의 조사대상 가구는 제주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로 2008년 구축된 가구인 5,014가구와 2009년에 구축된 가구인 추가표본 620가구, 2009년 이후 분가하여 1차년도 이후부터 신규로 발생한 분가가구이다.

8) 모든 조사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 정보에 대하여 설문한다. 단, 가구원조사에서 경제활동 상태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지고 있다.⁹⁾

2) 재정패널의 기부금 관련 자료

특히 재정패널은 1차년도 조사부터 가구설문에서 전년도 1년간 가구원의 기부금지출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매우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구조사 설문지에서 전년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다면 가구원 중 누가 어느 분야에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질문한다. 기부금에 대한 지출은 가구원별로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에 정기적으로 내는 헌금이나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내는 성금 등 기부의 성격이 있는 금액은 모두 조사된다. 재정패널에서는 기부금을 ①정당, ②교육기관, ③사회복지기관, ④문화예술, ⑤종교, ⑥기타의 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데 한 가구원이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쳐서 조사하고, 여러 분야에 기부를 하였다면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구원별로 재정패널에서 분류한 기부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선호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재정패널의 기부금 조사는 2001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Giving Korea¹⁰⁾ 자료와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관찰된다. 첫째, 조사되는 기부금지출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 기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가까운 이웃·친지·친구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는 조사되지 않는다. 둘째, 종교분야로 기부한 경우 순수 종교운영 목적의 헌금 및 보시와 종교기관을 통한 자선적 기부금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종교분야의 기부금지출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의 기부금이 혼합되어 있다.¹¹⁾

9) 가구조사 설문에서는 가구 소득의 구간을 묻는 간단한 질문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조사 설문결과로부터는 가구 소득 수치를 구할 수는 없다.

10) Giving Kore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beautifulfund.org> 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재정패널은 또한 가구원조사에서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했는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조사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와 종합소득신고자에게는 항목별로 소득공제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해당 항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실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총공제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어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금액만 알 수 있다.

3) 본 연구의 분석자료 구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재정패널에서 조사한 모든 가구에서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미혼가구와 사별 및 이혼 가구를 포함하여 배우자가 없는 독신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분석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재정패널 1차년부터 5차년도까지 모든 자료를 합한 혼합(pooling) 자료를 적용하였다.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동일한 가구와 개인이 여러번 관측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초통계와 회귀분석에서는 개인 혹은 가구의 id로 군집(clustering)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보고하였다.

2. 가구 유형별 기부금 현황

1) 독신가구

〈표 6-1〉에서는 독신가구의 기부분야별 기부금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기부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기부분야별 평균 기부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독신가구의 경우 기부금 지출결정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협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표의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기부분야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평균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분산성을 가정하는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기부금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¹²⁾ 그러나 가구 소득대

12) P-value=0.0635.

비 총기부금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0.61%, 여성가구주의 경우 1.64%를 차지하여 여성들의 평균기부성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줄 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구 소득에 대한 한계기부성향의 차이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소득의 증가가 기부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한계기부성향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회귀 모형을 추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론했던 제Ⅳ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세부 기부분야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정당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를 더욱 많이 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반면에 기부금 총액대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종교기부금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기부분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단위: 만원)

기부분야	남성	여성
정당	0.375 (0.315)	0.0323 (0.0172)
교육기관	0.0563 (0.0382)	0.117 (0.0525)
사회복지기관	1.461 (0.307)	1.041 (0.251)
문화예술	0.0536 (0.0525)	0.0231 (0.0215)
종교	12.00 (3.286)	17.11 (1.853)
기타	0.259 (0.0996)	0.114 (0.0382)
기부금 합계	14.20 (3.369)	18.44 (1.946)
가구 소득	2,345 (74.36)	1,606 (47.31)

가구수	645	1,102
관측치수	2,108	3,956

<표 6-1> 독신가구 가구의 성별에 따른 기부분야별 연평균 기부금액

- 주: 1. 평균 기부금은 0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2. 기부금과 가구 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0년 실질금액으로 전환한 금액임.
 3. ()는 개인id로 clustering한 robust standard error임.
 자료: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2) 부부가구

<표 6-2>는 부부가구의 기부분야별 기부금 지출 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의 기부금 총액이 아내의 기부금 총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또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재정패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각각 남편과 아내의 개인소득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거의 다섯 배에 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인소득 차이와 비추어 볼 때 기부금 총액의 차이는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기부분야별 평균 기부금액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남편의 기부금 평균이 아내보다 높게 나타나서 독신가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신가구와 달리 부부가구의 경우 기부금 지출결정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협상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 2>의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기부분야에 대한 선호만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부부가구의 기부금 지출이 배우자 개인의 선호뿐만 아니라 부부의 협상의 결과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 6-1>과 <표 6-2>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부자의 성별에 따른 기부성향과 기부분야 선호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별 기부행태 분석에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위: 만원)

기부분야	남편	아내
정당	0.418 (0.0887)	0.108 (0.0381)
교육기관	0.801 (0.335)	0.247 (0.0781)
사회복지기관	4.673 (0.449)	1.908 (0.213)
문화예술	0.164 (0.0625)	0.0938 (0.0549)
종교	30.46 (1.756)	25.67 (1.264)
기타	0.628 (0.116)	0.205 (0.0401)
기부금 합계	37.15 (1.955)	28.24 (1.321)
배우자 개인소득	3,468 (45.51)	619.0 (17.24)
가구수	4,542	4,542
관측치수	18,336	18,336

<표 6-2> 부부가구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기부분야별 연평균 기부금액

- 주: 1. 평균 기부금은 0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2. 기부금과 배우자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0년 실질금액으로 전환한 금액임.
 3. ()는 가구id로 clustering한 robust standard error임.
 자료: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IV. 실증 분석

1. 추정 모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개인 및 가구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추정모형으로 모서리해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¹³⁾ 즉, 데이터에 0의 기부금이 관찰되는 경우 이 또한 효용극대화의 결과로 이해한다.

독신가구의 경우 기부금 결정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¹⁴⁾ 아래 식 (5)의 우변에 포함된 z_{it} 는 개인 i 의 선호(preference)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구 순자산 변수를 포함한다.

$$(5) \quad g_{it} = \max(0, \beta_0 + \beta_1 m_{it} + z_{it} \gamma + u_{it}), \quad t = 1, \dots, T$$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남편의 기부금과 아내의 기부금이 한 가구에서 동시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추정모형으로 아래와 같이 Bivariate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 즉, 아래 식 (6)에 포함된 오차항 u_{it}^h 와 u_{it}^w 사이에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다는 가정하에 남편의 기부금 결정식과 아내의 기부금 결정식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13) Tobit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ooldridge(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14) 본 연구는 추정모형에 혼합(pooled)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패널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단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부부가구의 기부금 결정모형으로 Bivariate Tobit 모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발전된 계량모형으로 Random Effects Bivariate Tobit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quad \begin{aligned} g_{it}^h &= \max(0, \beta_0^h + \beta_1^h hm_{it} + \beta_2^h wm_{it} + \beta_3^h con_{it} + z_{it}^h \gamma^h + z_{it}^w \gamma^h + u_{it}^h), \quad t = 1, \dots, T, \\ g_{it}^w &= \max(0, \beta_0^w + \beta_1^w hm_{it} + \beta_2^w wm_{it} + \beta_3^w con_{it} + z_{it}^h \gamma^w + z_{it}^w \gamma^w + u_{it}^w), \quad t = 1, \dots, T. \end{aligned}$$

위 식에서 hm_{it} 와 wm_{it} 는 각각 i 가구의 t 시점에 남편과 아내의 개인소득을, con_{it} 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즉, 위의 추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가구의 소비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각각 본인과 배우자의 기부금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추정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의 기부금 결정모형에서 부부의 협상이 중요하지 않다면 가구의 총소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가구 소득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hm_{it} 와 wm_{it} 변수에 유의한 결과가 추정된다면 각 배우자가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남편과 아내의 기부금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부부가구의 기부금 결정에서 부부의 협상이 중요한 고려요인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추정식에 포함된 z_{it}^h 와 z_{it}^w 는 남편과 아내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 구성된 벡터를 나타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실행하는 부부가구의 모형을 구조모형 추정 방식(structural estimation)을 적용하여 추정한 Ham and Song(2014)에서는 배우자의 학력과 나이가 협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경우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선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 (6)과 같은 선형모형에서는 추정결과에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신가구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여 구조적인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 또한 협상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가구유형별로 추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먼저 분석에 포함된 독신가구의 경우에 남성가구의 학력을 나타내는 교육연수가 여성가구에 비해 약 4년 정도 높은 반면에 연령은 8세 정도 낮은 젊은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표 6-1>에 가구 소득의 차이를 가져온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구순자산과 월평균 소비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동일한 패턴이 관찰된다. 그러나 수도권 거주비율은 독신가구 가구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교육연수에 있어서 약 1년 정도의 차이만이 관찰되는데 이는 결혼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질혼의 경향을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원의 전문화를 통한 분업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과 순자산 및 소비지출의 규모가 독신가구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표 6-3> 역시 이러한 경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가구유형	독신가구		부부가구	
	남성	여성	남편	아내
교육연수	12.00 (0.167)	7.911 (0.172)	12.73 (0.0579)	11.65 (0.0600)
연령	46.25 (0.671)	57.96 (0.548)	50.20 (0.204)	47.01 (0.196)
가구원수	1.730 (0.0431)	1.695 (0.0317)	3.445 (0.0161)	3.445 (0.0161)
가구 순자산(백만원)	113.9 (2.699)	95.37 (2.346)	24,679 (519.8)	24,679 (519.8)
월평균 소비지출(만원)	113.9 (2.699)	95.37 (2.346)	216.5 (1.834)	216.5 (1.834)
수도권 거주	0.351 (0.0205)	0.364 (0.0157)	0.451 (0.0078)	0.451 (0.0078)

가구수	645	1,102	4,542	4,542
관측치수	2,108	3,956	18,336	18,336

<표 6-3> 설명변수 기초통계량

- 주: 1. 변수에 따라 결측치가 존재하여 가구수와 관측치수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음.
 2. 가구순자산과 월평균 소비지출은 소비지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0년 실질금액으로 전환한 금액임.
 3. ()는 가구id로 clustering한 robust standard error임.
 자료: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3. 추정 결과

1) 독신가구

<표 6-4>는 독신가구에 대하여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추정식 (5)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학력과 연령이 기부금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의 경우 높은 학력일수록 이타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령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¹⁵⁾

특히 가구 소득 변수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기부금 결정식에서 추정계수의 크기가 같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¹⁶⁾ <표 6-1>에서 보인 평균기부성향의 차이가 바로 한계기부성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기부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15) 연령변수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종교를 가질 확률이 높아져서 종교기부금의 영향이 발현된 결과라는 대안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패널 자료에 종교 유무를 묻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할 수 없었다.

16) P-value=0.4003.

요인을 통제한 결과 가구 소득의 증가로 인한 기부금 증가의 효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학력과 연령 및 가구원수 변수의 경우에도 추정계수의 크기에서 성별에 따른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도 같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¹⁷⁾

그러므로 <표 6-1>의 내용과 <표 6-4>의 추정결과들을 종합하면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분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총기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구 순자산 변수와 수도권 거주 더미변수의 경우에는 여성의 기부금 규모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차별성이 있으며 이는 보다 위험기피적인 여성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여지는 남아있다.

설명변수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교육연수	12.94*** (4.249)	10.28*** (2.010)
연령	2.272** (0.893)	2.826*** (0.580)
가구원수	-12.90 (10.87)	-7.656 (6.173)
가구 소득(만원)	0.0259*** (0.00907)	0.0176*** (0.00403)
가구 순자산(백만원)	-0.000467 (0.000450)	0.00145*** (0.000356)
수도권 거주	-32.11 (21.29)	-31.45** (14.01)

17) 교육연수와 연령 및 가구원수의 추정계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결합검정(joint test)을 해 본 결과 기각할 수 없었다(P-value=0.6376).

가구수	634	1,087
표본수	2,020	3,830
Log-pseudolikelihood	-2,462.35	-6,968.61

<표 6-4> 독신가구의 기부금 결정식 Tobit 모형 추정결과

-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2. ()는 가구id로 clustering한 robust standard error임.
 3. 종속변수인 총기부금은 만원 단위임.
 4. 추정식에는 상수항과 연도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에는 생략하였음.

2) 부부가구

부부가구의 남편과 아내의 총기부금 결정식 추정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독신가구의 추정결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의 효과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배우자의 소득이 기부금에 상황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남편의 기부금의 결정식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 소득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추정계수의 크기에 있어서는 자신의 소득의 영향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아내의 기부금 결정식에서는 아내 자신의 소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가구소득의 소득원천에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각각의 배우자의 선호를 실현하는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변수는 가구 소득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가구 소득 대신에 월평균 소비지출을 포함한 이유는 남편 소득, 아내 소득, 가구 소득 변수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남편과 아내의 추정식에서 이 변수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독신가구의 추정결과와 부합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와 유의성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기부금 결정식에 있어서 비대칭의 결과가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의 경우 자신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내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세 배에 달하는 반면에 아내의 학력은 오직 자신의 기부금 지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 변수의 경우에도 오직 아내의 연령만이 자신의 기부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신가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통계학 변수의 경우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개별 배우자의 협상력과 선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정결과를 직접적으로 배우자의 협상력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다만 독신가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부부가구에게서 독신가구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구에게서 나타난 이와 추정결과는 실제로 각각의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기부처에 얼마의 기부금을 지출할 것인지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협상이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설명변수	남편 기부금	아내 기부금
남편 교육연수	33.13*** (3.903)	10.86*** (2.101)
아내 교육연수	1.543 (3.655)	6.377*** (2.153)
남편 연령	0.651 (2.157)	0.341 (1.311)
아내 연령	2.181 (2.273)	4.084*** (1.419)
남편 소득	0.0204*** (0.00388)	0.00222 (0.00138)
아내 소득	0.00935** (0.00473)	0.0296*** (0.00385)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만원)	0.243*** (0.0705)	0.270*** (0.0480)

가구원수	-11.83 (7.688)	-0.664 (5.168)
가구 순자산(백만원)	0.000234 (0.000194)	0.000127 (0.000143)
수도권 거주	-54.02*** (15.54)	-23.78** (10.51)
가구수	4,471	
표본수	17,546	
Log-pseudolikelihood	-62,513.81	

<표 6-5> 부부가구의 기부금 결정식 Bivariate Tobit 모형 추정결과

- 주: 1. *** p<0.01, ** p<0.05, * p<0.1
 2. ()는 가구id로 clustering한 robust standard error임.
 3. 종속변수인 총기부금은 만원 단위임.
 4. 추정식에는 상수항과 연도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에는 생략하였음.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기부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선호의 차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가구유형별로 가구의 총기부금 지출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은 각자 선호하는 기부분야, 즉 기부의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인다. 둘째,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한계기부성향과 총기부금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체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자료에서 관측되는 개별 배우자의 기부금이 부부 사이의 협상의 결과이며 협상력이 높을수록 가구의 기부금 지출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선호가 더욱 많이 반영된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즉,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분야의 차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가구내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기부행위 결정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경제모형을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기본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가구의 기부행위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면 가구의 기부결정과정에서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또한 기부금 모집기관 및 단체의 기부금 모집 전략에도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구의 기부금 관련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어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정책개발 과정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 Behrman, Jere R. and Mark R. Rosenzweig, “Parental Wealth and Adult Children’s Welfare in Marriag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8, 2006, pp. 496 – 509.
- Blundell, Richard, Pierre–Andre Chiappori, Thierry Magnac and Costas Meghir, “Collective Labour Supply: Heterogeneity and Non–Particip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4, 2007, pp. 417 – 445.
- Browning, Martin, Francois Bourguignon, Pierre–Andre Chiappori, and Valerie Lechene, “Income and Outcomes: A Structural Model of Intrahousehold Allo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2, 1994, pp. 1067 – 1096.
- Ham, John C. and Heonjae Song, “The Determinants of Bargaining Power in an Empirical Model of Transfers between Adult Children, Parents, and In–Laws for South Kore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09, 2014, pp. 73–86.
- Lee, Jungmin, “Marriage, the Sharing Rule, and Pocket Money: The Case of Sou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5, 2007, pp. 557 – 581.
- Mazzocco, Maurizio, “Household Intertemporal Behaviour: A Collective Characterization and a Test of Commit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4, 2007, pp. 857 – 895.
- Wooldridge, J.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2002.
- 강철희,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3호, 2007, pp. 5–32.
- 강철희·변은지·구지윤, 「기부영역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사회복지영역과 비사회복지영역 및 비기부 집단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1호, 2011, pp. 247–276.
- 강철희·이종은·배민경,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2009, pp. 5–32.
- 김 옥·송미영,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2006, pp. 329–359.

- 박태규·윤병호·정진욱,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2008, pp. 79-100.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 『1~5차 재정패널 조사 사용자안내서』, 한국조세연구원, 2013.